7 폐수처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혼합성 난청, 이명

성별 남성 나이 35세 직종	폐수처리직 직업관련성 낮음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입사 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청력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양측성 혼합성 난청, 이명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201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상 폐수처리장의 소음은 82.9 dB(A)로 소음노출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다.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한 소음결과치는 82.5 dB~ 87.2 dB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이질환

4 유해인자

물리적 요인(소음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□사업장 입사 전에도 타인의 말을 약간 못 듣는 정도의 청력감소증상이 있었다고 하며, 임의로 보청기를 착용하기도 하였다. 2011년 4월부터 자연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 화농성 중이염(양측)으로 진료를 받았으며, 2011년 10월 까지만성 장액성 중이염(한쪽 또는 상세불명)으로 진료를 받았다.

조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폐수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약 5년간 1일 작업시간 동안 약 82~85dB(A)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, 2,000Hz 이하의 저주파수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지만일반적인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과거 질병력을 고려해 볼 때 고막천공을 동반한 화농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난청이 의심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